

2026. 9. 23.

수 신 :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

제 목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
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박미정 의원 발의)

위 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 및 「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
회의 규칙」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
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, 끝.

발의자 박미정 의원



(발의자 : 1명)

(찬성자 : 9명)

(발의자·찬성자 서명 붙임)

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박미정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3 .

발 의 자 : 박미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조희옥·정민우·김형우·
박은경·이슬기·김안숙·
정지광·안종숙·오지환
의원(총9명)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‘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 명칭이 ‘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례 속 용어와 문장을 정비해 조례 활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현행화(안 제9조제3항 및 제11조1항)

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합 의 : 밝은미래국 기후환경과 협의 완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조례안 예고 예정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탄소중립 사회”를 “구민의 환경권을 보장하여 탄소중립 사회”
로 한다.

제2조 중 “한다)”를 “한다) 제2조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 회”를 “사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온 실가스”를 “온실가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67 조제1항”을 “법 제6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추 진”을 “추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전지구적”을 “범지구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6호
중 “해외”를 “국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12조 에”를 “법 제12조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중 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기
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기후위기대응위원

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“위 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“심신장애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“기후위기 적응 대책”을 “기후위기 적응대책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서초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서초구”로, “적응대책”을 “기후 위기 적응대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적응대책”을 “기후위기 적응대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적응대책을 수립 · 변경하는”을 “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 · 변경하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적응대책”을 “기후위기 적응대책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수립 · 시행”을 각각 “수립 · 시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초구”를 “구”로, “개발 · 확산”을 “개발 · 확산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조사 · 연구”를 “조사 · 연구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후위	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	제1조(목적)	-----	
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	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		-----	
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<u>기</u>			-----	
<u>후위기 적응대책</u> 을 강화하고 <u>탄</u>			-----	<u>구</u>
<u>소중립 사회</u> 로의 이행을 촉구하			-----	<u>민의 환경권을 보장하여 탄소중</u>
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			-----	<u>립 사회</u> -----
목적으로 한다.			-----	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는 용어의 뜻은 「기후위기 대	제2조(정의)	-----	
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	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<u>한다</u>)		-----	<u>한다</u>)
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		-----	<u>제2조</u> -----.
제3조(기본원칙) 서울특별시 서초	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탄소중	제3조(기본원칙)	-----	
립 <u>사 회</u> 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	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		-----	<u>사 회</u> -----
라 추진되어야 한다.			-----	.
1. ~ 5. (생 략)	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제5조(사업자의 책무) ① 사업자	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	제5조(사업자의 책무) ①	-----	
하는 <u>온 실가스</u> 의 배출을 최소	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구		-----	<u>온실가스</u> -----

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협력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구민의 책무)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 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,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)

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(이하 “탄소중립비전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구민의 책무) ① -----
----- 법 제67조제1항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

-- 추진-----

-----.

제8조(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)

① --- 범지구적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
기후위기 대응 동향

제9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.

제3장 2050

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
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위원

6. 국외 -----

제9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법 제12조에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기후
위기대응위원회-----

-----.

제3장 서울특별시 서초구

기후위기대응위원회

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-----

----- 기후위기대응
위원회-----

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~ 5. (생략)

제23조(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)

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·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장 기후위기 적응 대책

제24조(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서초구 기후위기 적응대책(이하 “적응대책”이라 한다)을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-- 위원장-----

제14조(위원의 해촉) -----

-----.

1.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만

련-----.

제5장 기후위기 적응대책

제24조(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·시행) ① -----

--- 서울특별시 서초구 -----

--- “기후위기 적응대책”-----

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구청장이 적응대책을 수립·
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
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
표하여야 한다.

제25조(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
황 점검) 구청장은 적응대책의
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
다.

제30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
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
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구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지원

2. 구 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
지원

3. 서초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
전환 모델의 개발·확산

4.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·
연구 등

5. (생략)

--.

② 기후위기 적응대책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기후위기 적응대책
을 수립·변경하는 -----
-----.

제25조(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
황 점검) ----- 기후위기 적
응대책-----
--.

제30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
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----- 수립·시행 --
--

2. ----- 수립·시행 --
--

3. 구 -----
----- 개발·확산

4. ----- 조사·연
구 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 제31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 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 <u>하여</u> 서초구 기후대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 제31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① ----- ----- 위 <u>하여 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관 계 법 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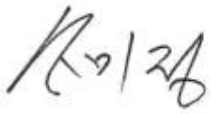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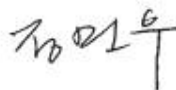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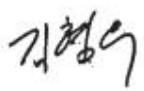
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제22조(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
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(박미정의원 발의) 서명부

발의자		찬성자	
의 원 명	서명 또는 날인	의 원 명	서명 또는 날인
박미정		조희옥	
		정민우	
		김형우	
		박은경	
		이슬기	
		김안숙	
		정소희	
		김정숙	
		윤지환	